

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1개월
전문기관 또는 단체	명 칭	법인등록번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주 소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
「발명진흥법」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식재산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산업재산권 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